

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집

Elder Abuse In Facilities Casebook



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집

Elder Abuse In Facilities
Casebook

Contents

발간목적

- 200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인천은 2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2004년),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2019년)
- 본 사례집은 2023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시설 내 노인학대 사례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에 공유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보호 정책마련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04**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체위변경 미실시 및 일지 허위기재로 인한
방임 학대 판정 사례
- 06**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주의 관찰 미흡과 관리 소홀로 인한
방임 학대 판정 사례
- 08** 시설의 안이한 대처로 입소노인이 욕창 4기까지 발전하게 된
방임 학대 판정 사례
- 10**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시설 종사자들로 인한
방임 학대 판정 사례
- 12** 입소노인에게 부적절한 음식물 제공과 기저귀 재사용으로 인한
방임 학대 판정 사례
- 14** 시설 입소노인에게 종사자의 업무를 강제한
신체적 학대 판정 사례
- 16** 입소노인에게 침대에 편하게 누워 주무시라며 강제로 신체 억압한
신체적 학대 판정 사례
- 18** 시설 입소노인 기저귀 케어 시 가림막 미사용으로 인한
성적 학대 판정 사례
- 20** 시설 입소노인 노동력 및 경제적 착취, 부적절한 케어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방임 학대 판정 사례
- 23** 주간보호센터의 일상 업무를 돕는 이용노인에 대한
신체적, 방임 학대 판정 사례
- 26** 시설 입소노인 다수를 끈으로 강제구속, 기저귀 재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방임 학대 판정 사례
- 28** 낙상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미흡 및 용변 시 가림막 미사용으로 인한
방임, 성적 학대 판정 사례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체위변경 미실시 및 일지 허위기재로 인한 방임 학대 판정 사례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시간에도
케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례 요약 및 개요

시설 입소노인 중 욕창관리 대상자로 지속적인 체위변경이 필요하나, 2시간에 1회씩 체위변경 기록지에 기재된 것과는 상이하게 최소 6시간 최장 10시간 이상 체위변경이 진행되지 않아 방임 학대 판정한 사례임.

현장 조사를 통해 종사자 상담, 노인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된 CCTV 영상 등 증거물을 수집함. 총 23일간 CCTV를 검토한 결과, 학대피해노인은 욕창관리 대상자로 지속적인 체위변경이 필요하나, 체위변경 기록지에 2시간에 1회씩이라고 기재된 것과 상이하게 최소 6시간 최장 10시간 이상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생활실에 종사자들이 출입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 이와 관련하여 욕창 방지가 필요한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어 **방임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남, 75세)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학대피해노인의 욕창에 대해 해당 시설에서 알리지 않음.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학대피해노인이 OO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환복을 하며 확인한 결과 욕창이 확인되지 않았고, 학대피해노인은 평소 풍채가 크고 땀이 많이 나며 편마비가 있어 욕창 등이 잘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 체위변경을 더욱 자주 했다고 주장함.
- 학대피해노인의 신체나 간호기록지 상 욕창이 없었고, 영양보호사들이 케어 시 욕창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있는데 보고 받은 적이 없고 피상담자가 직접 점검했을 때도 욕창이 없었음을 주장함.
- 해당 시설은 욕창 기록지를 오전 라운딩 시에 입소노인 점검 후에 하루에 한 번씩 기록 중이며, 영양보호사들이 수시로 점검한다고 함. 학대피해노인은 몸을 전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말을 잘하고 인지 능력도 있기 때문에 욕창이 생길 정도로 불편했으면 표현했을 것이라고 함.

2. 물적증거 수집

1) CCTV 확인

- 총 23일간의 CCTV를 검토한 결과, 야간 시간대 4~5시간 이상 학대피해 노인 생활실에 출입하지 않은 것 10회 이상, 7~10시간 가량 생활실에 출입하지 않은 것 8회 이상 확인함.

2) 체위변경 기록지 확인

- 체위변경 기록지 1달 기록지와 학대피해노인 생활실 앞 CCTV 비교하여 실제 체위변경 기록지에 따른 케어 (학대피해노인 생활실 출입 여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함.
-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는 생활실 출입이 잦아 야간시간대 출입 여부 확인함. CCTV 확인 내용(생활실 출입 부재함)과 상이하게 체위변경 기록지에 2시간에 1회씩 체위변경 하였다고 허위 기재되어 있는 것 확인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방임 학대

사례판정 근거

1. 증거물 CCTV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방임 학대 [지표1] 노인의 체위변경 및 이동을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회판정위원회 결과, 학대피해노인은 편마비를 앓고 있으며, 홀로 거동이 어려운 와상환자로 체위 변경 대상자였음. CCTV 확인 결과, 야간시간대 학대피해노인의 생활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위변경 기록지가 허위 기재된 것을 확인함. 이와 관련하여 욕창 관리에 필요한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방임 학대 판정함.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주의 관찰 미흡과 관리 소홀로 인해 추락사한 방임 학대 판정 사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사례 요약 및 개요

시설 입소노인이 방충망을 통해 4층에서 투신하였고 약 7시간이 지난 후 시설 종사자가 발견한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입소노인의 부재 및 추락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방임 학대 판정한 사례임.

현장조사를 통해 종사자 인터뷰 및 행정서류, CCTV를 확인함. 학대피해노인이 평소 야간 배회가 심하고 환청, 환각 등 정신과적 증상이 있어 종사자의 각별한 케어를 필요로 하는 요주의 관찰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관찰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설 측의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미흡하여 사고로 이어진 것을 확인함. 이에 노인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방임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남, 81세)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보호)

학대유형
(중복응답)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자기방임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시설 입소중인 학대피해노인이 4층 발코니 방충망을 통해 투신하였으나 야간종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후 약 7시간 후에 발견함.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학대피해노인은 섬망, 망상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평소 의사소통은 원활했다고 함. 또한 입소 당시부터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차라리 죽고 싶다.” 등의 우울감을 표현하며 퇴소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함. 이에 지속적으로 출입문을 서성이거나 나가려는 행동 등의 이상행동이 보였고, 학대피해노인이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코니의 경우 방충망 이외 안전장치는 없었다고 함. 학대피해노인의 추락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은 사실이며 해당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과 겹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함.
- 사고 당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는 학대피해노인이 잠을 깊이 자는 모습을 보여 ‘잘 자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학대피해노인 생활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함. 오전 6시 15분경 학대피해노인이 생활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후 화장실에도 없는 것을 알게 되어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고 함.
- 4층 발코니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이 파손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피해노인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함. 이후 즉각 보고하고 119에 신고하였다고 함.

2. 물적증거 수집

1) CCTV 확인

- CCTV 확인 결과, 피해노인은 오후 8시부터 11시 10분까지 생활실과 4층 현관 출입문 앞을 서성이며 배회증세를 보였으며 오후 11시 11분경 4층 발코니(추락 장소 추정)로 이동한 뒤 CCTV상으로 확인 불가하였음.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동선으로, 이동 후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방임 학대

사례판정 근거

1. 증거물 CCTV 및 종사자 증언, 시설 환경점검 결과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방임 학대 [지표2]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지표3]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결과, 시설에서 입소노인이 발코니로 이동하지 않도록 통제하지 못했으며, 야간 근무자가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피해노인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확인함. 이에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고,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여 방임 학대로 판정함.

시설의 안이한 대처로 입소노인이 욕창 4기까지 악화된 방임 학대 판정 사례



욕창치료전문
요양원이라구요?!



사례 요약 및 개요

입소노인의 욕창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소노인의 꼬리뼈와 양측 대퇴부 욕창이 4기로 악화 되어 방임 학대로 판정한 사례임.

현장 조사를 통해 종사자 상담 진행함. 해당 시설 촉탁의가 외래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시설은 추가로 외래 진료를 실시 하지 않음. 간호기록지 확인 결과, 자체적으로 욕창 딱지 위에 소독약만 도포 하는 행위를 진행하여 입소노인의 욕창이 4기로 악화됨을 확인함. 이와 관련하여 욕창에 대한 의료 조치 미흡으로 **방임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여, 76세)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해당 시설에 입소해 있던 피해노인 꼬리뼈와 대퇴부에 욕창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음.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촉탁의만 전화상담 진행)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학대피해노인 꼬리뼈에서 수포가 올라온 듯 물집이 생겨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바르라고 원장이 지시하였으며, 시설에서 치료를 하면 욕창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함. 이후 까맣게 딱지가 생겼으며, 딱지 위로 약(포비돈)을 발랐으나 차도 없이 속으로 염증이 악화되어 욕창이 발생하고 2개월 후 욕창 4기로 병원으로 이송함.
- 피해노인 욕창 초기에 수포가 발생했다 사라짐을 반복하였고, 이후 꼬리뼈 주위가 검게 변하여 촉탁의 진료도 받았으나, 지시 사항인 외래진료는 실시 하지 않음.
- 피해노인 욕창이 4기로 악화 되기까지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시설에서 다른 어르신을 자체적으로 치료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피해 노인도 같은 방법으로 시설 내에서 치료를 하면 나을 것이라 생각함.
- 피해노인 꼬리뼈에 수포가 터지면서 표피가 검게 되었으며 대퇴부에도 수포가 생겨 터지면서 과사가 되고 안으로 염증이 생겼다는 내용이 간호기록지에서 확인됨.
- 해당시설 촉탁의는 피해노인 욕창 초기에는 꼬리뼈와 대퇴부 부위 욕창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피해노인 식사 및 체위변경이 중요하다는 소견이었으나 1개월 후 진료 시 꼬리뼈, 대퇴부 욕창 상태가 심각해져 보호자 고지 및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간호조무사에게 소견을 전달함.

2. 물적 증거 수집

1) 신고자 제출 사진 : 피해노인 꼬리뼈, 양측 대퇴부 욕창 4기 사진 확인함.

2) 피해노인 간호기록지 확인

- 간호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촉탁의 진료와 드레싱 및 약물치료를 진행하여 피해노인의 욕창 상태가 악화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해노인이 욕창 통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난 후에야 보호자 고지 및 병원으로 이송된 부분을 확인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방임 학대

사례판정 근거

1. 신고자 제출 사진, 관련자 진술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방임 학대 [지표2]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지표3]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결과, 신고자 제공 사진과 관련자료(간호기록지)를 확인하였으며, 촉탁의 소견으로 외래진료의 필요성을 전달하였으나 시설측의 안이한 대처로 학대피해노인의 증상을 악화시켰고 의료조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방임 학대로 판정함.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시설 종사자들로 인한 방임 학대 판정 사례



약은 약사에게,
진단은 의사에게!!



사례 요약 및 개요

피해노인의 건강 이상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과 적절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시설 측의 판단으로 피해노인에게 의료조치가 없어 치료가 지연되면서 증상을 악화시켜 적절한 의료 조치 미흡에 따른 방임 학대 판정한 사례임.

현장조사를 통해 종사자 상담, 노인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된 행정 서류 및 CCTV 영상 등 증거물 수집함. 진술 조서 및 증거물을 통해 피해노인이 과거에도 반입된 음식을 먹고 복통을 일으킨 이력이 있음을 확인함. 시설측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단순 복통으로 판단하고 의사 진료 및 입원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피해노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질병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과 적절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시설측의 임의 판단으로 조치(단순 복통으로 인지)만 이루어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소홀로 피해노인의 의료적 조치가 지연되었기에 **방임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여, 77세)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피해노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시설측에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가 없었음.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오후 10시경 피해노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손을 따고 복부 핫팩, 매실차 음용, 약(타이레놀) 복용 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간호사에게 보고함.
- 간호사 지시로 상비약(소화제) 추가 복용하였으며, 이후 특이사항 없이 주무심.
- 다음날 오전 9시경 간호조무사와 피해노인 대화 중 복통이 나아짐을 확인 하였고 바이탈 체크 시 저혈압이 확인되어 베개에 다리 올려 드림.

2. 물적증거 수집

1) 급여제공기록지

- 오후 5시경 식사 이후 특이사항 없음.

2) CCTV 확인

- 복통 호소 이후 취침 소등하고 약 1시간마다 피해노인 취침 확인함.
- 다음날 오전 9시경 간호조무사와 피해노인 대화 중 특이사항 없음을 확인하는 장면을 CCTV 통해 확인함.
- 오전 10시 30분 바이탈 체크 시 저혈압 확인되어 베개에 다리 올리고 피해 노인 상태 확인하였으나, 저혈압 지속되어 기력 저하로 119로 후송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방임 학대

사례판정 근거

1. 행정 서류 및 CCTV, 종사자 진술 조서 등의 증거물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방임학대 [지표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소홀히 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결과, 과거 같은 음식을 먹고 문제가 된이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된 것은 시설측 관리 소홀이며, 피해노인의 건강 이상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과 적절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도 시설측의 자체 판단으로 치료가 지연되면서 피해노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적절한 의료 조치 미흡으로 방임 학대 판정함.

입소노인에게 부적절한 음식물 제공과 기저귀 재사용으로 인한 방임 학대 판정 사례



원장님 그게
몇 분이나 된다고.....



사례 요약 및 개요

입소노인들에게 부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회용 기저귀 및 물티슈를 재사용하고 오염된 물티슈 원단을 잘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방임 학대 판정한 사례임.

현장 조사를 통해 조리실 내부에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상한 음식물(호박죽, 팥죽 등), 밀폐하지 않아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이 냉장, 냉동고에 가득 보관되어 있는 비위생적인 상태를 확인하였음. 또한, 피해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저귀, 패드, 물티슈 등을 세탁하여 재사용하거나 오염된 부분만 잘라 재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방임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여, 73세)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시설에서 음식물을 부적절하게 보관 후 입소노인에게 제공하고, 일회용 기저귀 및 물티슈를 재사용한다고 함.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었고, 상한 음식물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오염된 물티슈 원단 및 기저귀 재사용(일부분을 오려서 사용, 세탁하여 재사용)에 대한 진술과 현장 증거물 확보함.
- 언제 배달되었는지 모르는 음식물을 냉장고에 쌓아두고, 기저귀를 세탁 해 생활실에 넣어 놓은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함.
- 시설장에게 기저귀를 배급받아 사용했으며 피해노인 목욕 시에도 기저귀 상태 확인하여 재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

2. 물적증거 수집

- 유통기한이 지나고 오염된 음식물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관련자 진술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
- 오염된 물티슈 원단 사용과 기저귀 재사용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현장에서 증거물 확인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방임 학대

사례판정 근거

1. 증거물 CCTV 및 종사자 진술, 시설점검 결과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방임 학대 [지표2]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결과, 시설 내에서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이 밀폐되지 않고 열려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과 기저귀 및 물티슈를 세탁 후 재사용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피해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방임 학대 판정함.

시설 입소노인에게 종사자의 업무를 강제한 신체적 학대 판정 사례

“
종사자의 업무와 입소노인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

사례 요약 및 개요

시설 입소노인에게 입소노인 기저귀 케어 시 용변을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티슈를 낮 시간대 거실에 모여 앉아 물티슈 접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입소노인 치매 증상으로 인지와 의사 표현이 불분명하여 자기결정에 의해 물티슈 접는 일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신체적 학대 판정한 사례임.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피해노인(3명),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인터뷰와 행정서류 확인함. 이를 통해 실제 학대 피해노인들이 물티슈를 접고 있는 모습 확인했으며, 해당 시설은 “배회 증상을 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 이었고, 학대피해노인들이 먼저 물티슈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피해노인들은 치매 증상으로 인지와 의사 표현이 불분명하여 자기결정에 의해 물티슈 접는 일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종사자의 고유 업무를 학대피해노인들의 특정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업무를 분담한 것은 적절치 않으며, 소근육 활동이 가능한 색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함. 이에 입소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면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신체적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 외 2명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시설 측은 기저귀 케어 시 용변을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티슈 접는 일을 입소노인들에게 시킨다고 함.
해당 물티슈는 본래 종사자들이 접어야 하는 고유 업무이나 이를 입소노인에게 시킴.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학대피해노인들은 치매환자로 거실을 자주 배회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함.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물티슈 접는 일을 제공했다고 함. 물티슈 접는 일은 원래 종사자들이 하는 업무이지만, 학대피해노인들에게 강제로 시킨 적은 없다고 진술함.

2) 학대피해노인 3명 상담

- 학대피해노인들은 물티슈 접는 일을 해봤다고 함.
- 그 외 강제성, 시설생활 만족도 등 질문을 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들은 불분명한 대답을 하고, 손뼉을 치며 돌아다니는 등 인터뷰의 어려움이 있었음.

2. 물적증거 수집

1) 최초 신고자 제공 사진

- 해당 시설이 구입한 물티슈를 낮 시간대 거실에서 3명의 학대피해노인들이 접고 있는 모습과 식사시간에도 식판 옆에 물티슈가 놓여 있는 모습을 확인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신체적 학대

사례판정 근거

1. 학대피해노인 3명,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증언, 증거사진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신체적 학대 [지표5]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결과, 학대피해노인들은 치매진단을 받아 인지와 의사표현이 불분명하여 자기 결정에 의해 물티슈를 접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업무를 지시한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되어 신체적 학대 판정함.

입소노인에게 침대에 편하게 누워 주무시라며 강제로 신체 억압한 신체적 학대 판정 사례

“
역지로 주무시게 하는게
노인학대라고 생각 못했어요.
”

사례 요약 및 개요

시설 입소노인을 종사자가 양쪽에서 잡고 생활실로 끌고 들어와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어깨 부위를 힘껏 여러차례 누르고 제압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신체적 학대 판정한 사례임.

현장조사를 통해 종사자 상담, 노인학대 의심 정황 관련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종사자 2명이 학대피해노인을 침대에 누운 채 수면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강압적으로 끌고 방으로 들어와 일어나려는 피해노인의 어깨를 수차례 누르는 행위를 확인함. 이에 입소노인의 신체를 누르거나 억압하고 몸을 함부로 다룬 것에 대해 **신체적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여, 71세)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시설 입소노인을 생활실로 끌고 들어간 이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어깨 부위를 누르고 제압하는 행위를 함.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학대행위자들이 피해노인에게 함부로 한다는 보고를 받고 CCTV 영상을 확인함.
- CCTV 확인 결과 학대행위자들이 피해노인을 강압적으로 생활실로 끌고 들어와 침대에 눕힌 후 어깨와 가슴부위를 누르는 영상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함.
- 피해노인은 치매로 배회가 심하고 OO학대행위자가 피해노인을 생활실로 끌고 가며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노인의 팔을 잡고 같이 들어갔을 뿐 이후 옆에서 피해노인을 억지로 침상에 눕히고 어깨와 가슴부위를 누른 행위를 목격한 것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가만 있었다고 진술함.
- 생활실로 들어가기 싫어해 복도에 누워 있는 피해노인을 생활실 내 침대에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돕고자했는데 피해노인이 거부하여 △△학대행위자와 같이 생활실로 모셔왔고 침대에 눕혀 조금만 제재하면 주무실거라 생각했고 본인의 행동은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2. 물적증거 수집

1) CCTV 확인

- 학대행위자가 피해노인을 끌고 들어가 침상에 억지로 눕히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확인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신체적 학대

사례판정 근거

1. 증거물 CCTV 및 종사자 진술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신체적 학대 [지표1] 노인을 누르거나 억압한다.
노인의 몸을 함부로 다룬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결과,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피해노인의 두 팔을 강압적으로 잡고 생활실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어깨 부위를 수차례 누르고 제압하는 행위를 확인함. 이에 신체적 학대로 판정함.

시설 입소노인 기저귀 케어 시 가림막 미사용으로 인해 성적 학대 판정 사례



우리도 창피함과
수치심을 느낀답니다.



사례 요약 및 개요

시설 입소노인의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목욕 후 입소노인의 몸을 수건으로 감싼 채 생활실에 들어오는 모습, 환복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았고, 옷을 갈아입하던 중 젖꼭지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어 성적 학대 판정한 사례임.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및 종사자 상담, CCTV 영상자료를 확인함.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입소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할 때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 또한 CCTV 영상자료 확인 중 목욕 후 입소노인 A의 몸을 수건으로 감싼 채 생활실에 들어오는 모습, 종사자가 입소노인 C의 옷을 갈아입힐 때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았고, 옷을 갈아입하던 중 젖꼭지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추가 확인함. 이에 노인에게 성추행을 한다,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성적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 외 2명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입소노인의 기저귀 교체할 때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음.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시설 내 가림막이 배치되어 있으나 매번 생활실에 가지고 들어가기 번거롭고, 기저귀를 빨리 교체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학대행위자는 옷을 갈아입하던 중 입소노인과 장난을 치다가 젖꼭지를 잡아 당긴 것이며, 절대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

2) 학대피해노인 상담

- 시설생활 만족도, 가림막 사용 여부 등 질문하였으나 불분명한 대답을 하는 등 학대의심정황에 대한 진술 확보가 어려웠음.

2. 물적증거 수집

- CCTV 검토한 결과, 입소노인 A와 B의 기저귀 케어를 할 때와 입소노인 C의 옷을 갈아입힐 때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것 확인함. 또한 입소노인 C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젖꼭지를 잡아당기는 모습과 입소노인A 목욕 케어 후 신체를 수건으로 감싼 채 생활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성적학대

사례판정 근거

1. 증거물 CCTV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성적 학대 [지표1] 노인에게 성추행을 한다.

[지표2]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2. 자체사례회의 결과,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 입소노인의 신체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드러내는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적 학대로 판정함.

시설 입소노인 노동력 및 경제적 착취, 부적절한 케어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방임 학대 판정 사례

“
지속적으로 위험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을 멈춰주세요.
”

사례 요약 및 개요

시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입소노인에게 시설 외부의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킨 점과 노동에 대한 대가 미지급 및 병원 진료 이외의 업무 동행 등 적절한 케어가 제공되지 않아 신체적, 경제적, 방임 학대 판정 한 사례임.

현장조사를 통해 종사자, 학대피해노인 및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상담 진행, 노인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된 행정 서류 및 CCTV 영상 등 증거물 수집함. 최초 신고자, 목격자의 증언과 사진 자료 등에 따라 시설 외부의 일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킨 부분에 대해 **신체적 학대 판정**함. 또한, 시설 측에서 학대피해노인에게 시설 외부의 일을 지속해서 참여 시킨 점과 참여 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경제적 학대 판정**하며, 시설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입소노인에게 병원 진료 이외의 업무 동행 등 적절한 케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이에 입소노인에게 부적절한 돌봄을 제공한 것에 대한 **방임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남, 66세)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입소노인인 학대피해노인에게 시설 외부의 일에 참여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함.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학대피해노인 외출 시에는 보호자 고지 후 이동했으며, 병원 진료 후 함께 철물점을 방문한 것 외에는 외출한 적이 없고 시설 내·외부에서 학대피해노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적은 없음을 진술함.
- 학대피해노인은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타 입소자들과 다툼이 잦았고, 타 입소자와 크게 다툰 후 우측 발목 부상 관련 병원 동행 후 깁스했다고 함. 병원 동행 시 물품 구매와 용접가게를 방문한 이력이 있다고 진술함.
- 현재 시설장의 사택 수리 중으로 근방에 위치한 학대피해노인 병원 진료 시에는 물품을 차에 싣고 사택에 옮긴 후 시설로 복귀한 적이 있으며, 외출 동행 시 항상 식사를 제공했다고 함.
- 학대피해노인이 식사 시간에 배식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에 제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으나, 타 종사자는 학대피해노인에게 “하지 말라고 만류해도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했다고 함.
- 이외 학대피해노인이 심심하다며 자의로 시설 앞의 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안전상의 이유로 일을 금지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함.

2) 학대피해 노인 상담 *청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필담으로 상담 진행함.

- 시설 화단 가꾸기, 밭일 및 공사장 리모델링 등의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묻자, “없어요. 여기서 지내는 것은 만족한다.”라고 답함.

3) 최초 신고자 및 목격자 2명 상담

- 학대피해노인이 시설 근처에 위치한 밭을 가꾸는 모습과 시설 외부에서 짐을 옮기는 모습을 목격 후 촬영했다며, 영상과 사진을 제공함.
- 타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학대피해노인이 밭을 가꾸고 물을 주는 등의 잡일을 맡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함.

2. 물적증거 수집

1) 최초 신고자 제공 사진

- 학대피해노인이 타 시설 앞 밭을 가꾸는 모습 2회와 차량에서 물건을 옮기는 모습 1회가 촬영된 영상 및 사진 확인함.

2) CCTV 확인

- 시설 입구 및 복도 CCTV 검토한 결과, 학대피해노인이 종이상자를 정리 해 시설 외부로 나가는 모습과 외출 시 닫혀있는 문을 스스로 개방하여 밖으로 나가는 모습 확인함. 또한 타 입소자, 종사자들과 해당 시설 복귀 시 학대피해 노인이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과 시설장과 대화 후 시설 밖으로 나가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 확인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신체적, 경제적, 방임 학대

● 사례판정 근거 ●

1. 증거물 CCTV와 최초 신고자 및 목격자 2명의 진술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신체적 학대 [지표5]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경제적 학대 [지표1]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방임 학대 [지표1] 노인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및 서비스를 방치한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결과, 상기 증언과 최초 신고자 제공자료 및 CCTV상, 치매(장기요양 4등급) 및 청각장애 2등급으로 시설의 적절한 보호가 필요한 입소노인이나 시설 외부의 일에 지속해서 참여 시키는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 및 외부 일 참여 시 관리감독자 부재 등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신고 내용에 대해 시설 측은 '학대피해노인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주장하나,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대상자가 지속해서 위험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제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신체적, 경제적, 방임 학대 판정함.

주간보호센터의 일상 업무를 돕는 이용노인에 대한 신체적, 방임 학대 판정 사례



시설 단순 업무, 어르신이 원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례 요약 및 개요

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들에게 점심식사에 필요한 식재료를 부상 위험이 있는 식칼로 다듬는 정황이 확인되어 신체적, 방임학대 판정한 사례임.

현장조사를 통해 종사자 및 학대피해노인 상담, 노인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된 CCTV 영상 등 증거물을 수집함. 총 22일간 CCTV를 검토한 결과, 학대피해노인 2~3명이 총 22회, 거의 매일 약 10분~1시간 이상 식재료를 식칼로 직접 손질한 것을 확인함. 이에 학대피해노인들이 거의 매일 식재료를 손질하는 모습 확인된 것 관련하여 **신체적 학대 판정**함. 또한, 부상 위험이 있는 식칼로 식재료를 다듬는 정황 확인된 것 관련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임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여, 86세), 000(여, 87세), 000(여, 85세)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 보호서비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종사자가 이용 노인들에게 점심식사에 필요한 식재료 손질을 하게 함.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조리원이 1명이기 때문에 식재료 다듬는 것을 타 직원들이 도와줄 수 밖에 없을 때가 있으며, 식재료 손질에 관심 있는 이용 노인 3명이 자진해서 도와준 것이고 강제로 시킨 것은 아니라고 함. 또한, 식칼 등의 위험한 도구는 이용 노인들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함.
- 이용 노인이 식재료 다듬는 일을 돕는 것이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옛 기억을 자꾸 되살려 드리는 것이 치매의 정도를 악화시키지 않고 유지 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함. 나물 다듬는 것이 소근육 발달을 통해 치매 악화 예방에 도움이 되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식칼 이용은 위험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먼저 식칼로 손질해서 드리면 이용 노인들은 손으로만 나물을 다듬는다고 함.
- 여성 어르신들은 집에서 요리하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침에 “뭐 할 거 없냐.”고 하면 가끔 파 다듬는 걸 할 수 있게 한다고 함. 식칼로 다듬어야 하는 파뿌리 부분은 직원들이 작업한 후, 손으로만 손질할 수 있게 제공했다고 함.

2) 학대피해노인 상담

- 손질해야 할 식재료가 많아서 하는 것이며 힘들지 않았고, 직원이 강제로 시킨 것은 아니라고 함. 시금치, 대파를 손질할 때 식칼을 사용한 적은 있다고 함.

2. 물적증거 수집

1) CCTV확인

- 총 22일간의 CCTV를 검토한 결과, 학대피해 노인이 식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이 총 22회 발견되었으며, 거의 매일 약 10분~1시간 이상 진행한 것을 확인함. 또한, 종사자와 함께 식재료를 다듬는 것 보다 학대피해노인 2~4명이 모여 식칼로 직접 식재료 다듬는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확인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신체적, 방임 학대

● 사례판정 근거 ●

1. 증거물 CCTV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신체적 학대 [지표5]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방임 학대 [지표2]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결과, CCTV상 종사자의 도움 없이 거의 매일 식재료를 손질하는 등 종사자의 업무를 이용 노인이 지속적으로 분담해온 것으로 판단되어 신체적 학대로 판정함. 또한, 이용 노인에게 위험 부담이 있는 식칼을 직접 사용하게끔 한 정황에 대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임 학대 판정함.

시설 입소노인 다수를 끈으로 강제구속, 기저귀 재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방임 학대 판정 사례

“
 어르신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

사례 요약 및 개요

시설 입소노인들의 다리가 붓는다는 이유로 입소노인들의 다리를 헨 끈으로 침대에 묶었으며, 일부 입소노인들의 팔다리를 밤새 강제 구속하고 입소노인들을 침대 시트 없는 차가운 매트리스에 눕히며, 기저귀를 재사용하여 방임 학대로 판정한 사례임.

현장조사를 통해 종사자 상담, 노인학대 정황과 관련된 증거자료 수집함. 현장 조사 당시 해당 시설 입소노인의 생활실 수납공간마다 인가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헨 끈을 발견하였고 입소노인들이 헨 끈으로 침대와 휠체어에 묶여 있는 상황을 확인함. 이에 입소노인들의 신체를 헨 끈으로 장시간 구속하여 **신체적 학대 판정**함. 또한, 입소노인들을 침대 시트 없는 차가운 매트리스에 눕히며, 기저귀 재사용을 위해 가위로 오려져 있는 기저귀와 오염된 기저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관련자 진술을 통해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방임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 외 12명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입소노인들의 다리를 현 끈으로 침대에 묶으며, 일부 입소노인의 팔다리를 보호대로 밤새 강제 구속하고 기저귀를 재사용하여 비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입소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입소노인의 구속이 있었음을 인정함.
- 입소노인들의 부종으로 다리가 붓거나 낙상 위험이 있을 때 끈으로 직접 묶거나 종사자들에게 묶으라고 지시한 사항을 확인함.
- 입소노인의 발을 올리고 억제대(끈)로 고정하라 지시한 부분과 휠체어 불량으로 입소노인들이 휠체어 이용 시 끈으로 묶은 것을 확인함.
- “기저귀를 아껴 써라, 절약하라”라는 지시가 있어 기저귀의 깨끗한 부분을 잘라서 재사용 하였음을 인정함.
- 기저귀가 손상되면 테이프로 이어서 재활용하였다고함.

2. 물적증거 수집 * 해당시설은 CCTV 미설치

- 휠체어 이용 시 긴 끈을 억제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함. 일부 입소노인에게 휠체어에 끈을 사용 해 억제 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
- 입소노인 생활실 내 서랍에서 구속에 사용되는 다량의 끈, 가위로 오려진 기저귀 발견, 시설 내 창고 바구니에서도 재사용한 기저귀를 발견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신체적, 방임 학대

사례판정 근거

1. 증거물과 종사자 진술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신체적 학대 [지표2] 억제대 외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의 몸을 묶거나 구속한다.

방임 학대 [지표2]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결과, 억제대 사용에 대한 관련자 진술, 증거물 발견을 통해 억제대 사용에 대한 규정없이 자의적 판단하에 피해노인들을 신체적으로 오랜 시일동안 강박하였음이 확인되어 신체적 학대로 판정함. 또한, 기저귀를 재사용하는 비위생적인 행동과 침상에 시트 없이 차가운 매트리스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본적인 침상 관리가 되지 않아 방임 학대로 판정함.

낙상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미흡 및 용변 시 가림막 미사용으로 인한 방임, 성적 학대 판정 사례



가림막! 또 잊으셨나요?



사례 요약 및 개요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미사용한 상태로 용변을 보게 하고 혼자 침상으로 이동 중 넘어져 하체가 노출된 상황과 넘어지면서 대퇴부가 골절되는 응급상황임에도 즉각적인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방임, 성적 학대 판정한 사례임.

현장조사를 통해 종사자 상담, CCTV 자료에서 피해노인이 가림막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 것과 낙상하면서 하체가 노출된 상황으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성적 학대 판정**함.
또한, 이동 변기에서 침상으로 이동 중 넘어진 상황에서 종사자의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함.
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어 **방임 학대 판정**함.

신고개요

학대피해노인	000(여, 85세)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학대유형 (중복응답)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자기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사례개요

신고내용 피해노인이 이동 변기에서 가림막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 것과 침상으로 이동 중 넘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되었고 낙상으로 인해 대퇴부가 골절된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실시하지 않음.

조사내용

1. 진술증거 수집

-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시설학대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조사 안내함(현장출입조사서 전달).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1:1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술 증거 확보함.

1) 학대행위자 및 종사자 상담

- 생활실 내 용변을 보던 피해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양말은 벗겨지고 바지는 흘러 내려 있었으나 종사자 혼자 휠체어에 피해노인을 앉히려다 보니 바지를 올려 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 생활실에 두 분만 계셔서 출입구 커튼만 가리고 기저귀를 교체하는 등 혼자 일해 바빠서 가림막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함.
- 낙상한 피해노인을 “시각장애가 있으셔서 변기 주위에 물체를 놓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림막도 옆으로 치워 놓았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부딪쳐 넘어져서 다칠까 봐”라고 진술함.
- 낙상 이후 도움을 받아 피해노인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고 피해노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누르며 “아프세요?”라고 물어보니 피해노인이 대답을 명확히 하지 않아 다리를 들어보라고 하니 양쪽 다리를 다 들어올려서 골절을 의심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 진통제 처방과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피해노인에게 괜찮은지 재차 확인하니 “괜찮다”라고 하셨고 진짜 괜찮아 보였다고 진술함.
- 낙상사고가 토요일 오전에 발생하였고,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병원에 가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고 진술함.

2. 물적증거 수집

1) CCTV 확인

- 피해노인이 가림막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것과 침상으로 이동 중 넘어진 피해노인의 하체가 노출된 상황을 CCTV 자료 확인함.

2) 간호기록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확인

- 피해노인이 용변 후 침상으로 이동 중 낙상하여 대퇴부가 골절된 상황으로 응급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확인함.

사례판정

사례판정 결과 성적, 방임 학대

● 사례판정 근거 ●

1. 증거물 CCTV와 기록지에 따라 아래 지표를 근거하여 판정함.

성적 학대 [지표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방임 학대 [지표2] 노인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다.

[지표3]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2. 자체사례회의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결과, CCTV 상 피해노인이 이동변기에서 가림막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용변을 본 것과 침상으로 이동 중 넘어져 하체가 노출된 상황에 대해 성적학대로 판정함. 또한 낙상한 피해노인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방임 학대 판정함.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